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3/ 5 통권 171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전기자동차 무인충전 설치 장소가 아니고, 사업자 직원인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임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회사가직원에게 사택 제공과 임차료 부담의 근로소득비과세 조건>

개념항목	해당내용, 조건, 계산방법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해당액은 추가급여로 근로소득 합산임(사택임차료로 회계처리함)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3호 저목(복리후생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 충족시 비과세
해당인원	1. 회사 소유 사택(대기업도 적용 가능) ① 주주아닌 임원+소액주주임원 ② 임원아닌 종업원 ③ 국가 등의 근로소득자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소요자금의 무상·저리 대여금 혜택 비과세 (회사와 친족관계 제외, 지배주주 등인 종업원은 제외함) 3.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용 부담의 종업원 혜택금액(대기업도 가능) 4.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사택제공이익(무상제공, 임차무상 제공등)
적용사택 등	① 사택 : 사용자(회사) 소유 주택을 종업원과 임원에 무상·저가로 제공 ② 임차제공 : 회사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 무상제공 후 직원간 순환주택 임차주택사용의 연속성 : 기존 종업원 전근·퇴직·이사하면 승계직원 입주 (단, 입주희망자 없거나 임차잔여기간 1년 미만이면 연속성 불필요)
비과세 금액	한도금액 규정 없음(조건 충족시 전액 비과세, 통념상 월 200만원 내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운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7호 / 주간 10호

2025. 3. 5.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 제공과 임차료 부담의 근로소득 비과세 조건	표지
CEO의 경영산책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조경수목공사 회계처리 - 소액 대량구매시 자산화 - 법인차량 구매시 공채매입 회계처리 - 외화(USD)로 증장비 구입시 환율	5 6 6
눈에맞는 절세미인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해야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밸류업 기업 관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주요 내용 -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9 10
직장인Survival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④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 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사전법규부가-542, 2024.08.27)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전기자동차 무인충전 설치 장소가 아니고, 사업자 직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12
세무정보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5 1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경영학 분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로 번역함에 따라 주로 소유지배구조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 이해를 위해 구조와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구조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떠한 행위자들이 어떤 제도와 체제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고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버넌스의 맥락 측면에서 제도의 설계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 공간적, 시간적 지평, 행위 등을 하는 비전의 생성을 포함한다. 제도적으로는, 기능적 연계와 실질적인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집합적 학습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일이며, 전략적으로는 비전의 공유를 장려하는 일이다.

## ■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과정적 차원에서 볼 때 거버넌스는 주어진 과제를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와 관련된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한 상호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명령, 통제, 제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합의, 조정,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과정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조종(steering)과 조정(coordinating)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종기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예들 들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사항을 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2023. 12, 문단 26-27. 요약 인용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구를 포함할 수 있음)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를 보면,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감독할 의사결정기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과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책무(responsibility)와 활동, 건전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활동의 계획,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모니터링과 보고, 그리고 효과적인 독립적인 통제와 인증 활동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내부감사협회의 Norway에서 연구 제시한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면 <그림 1-1> 거버넌스의 구성과 같다\*.

\* Guidelines for governance, 1st Edition 2021, IIA Norway,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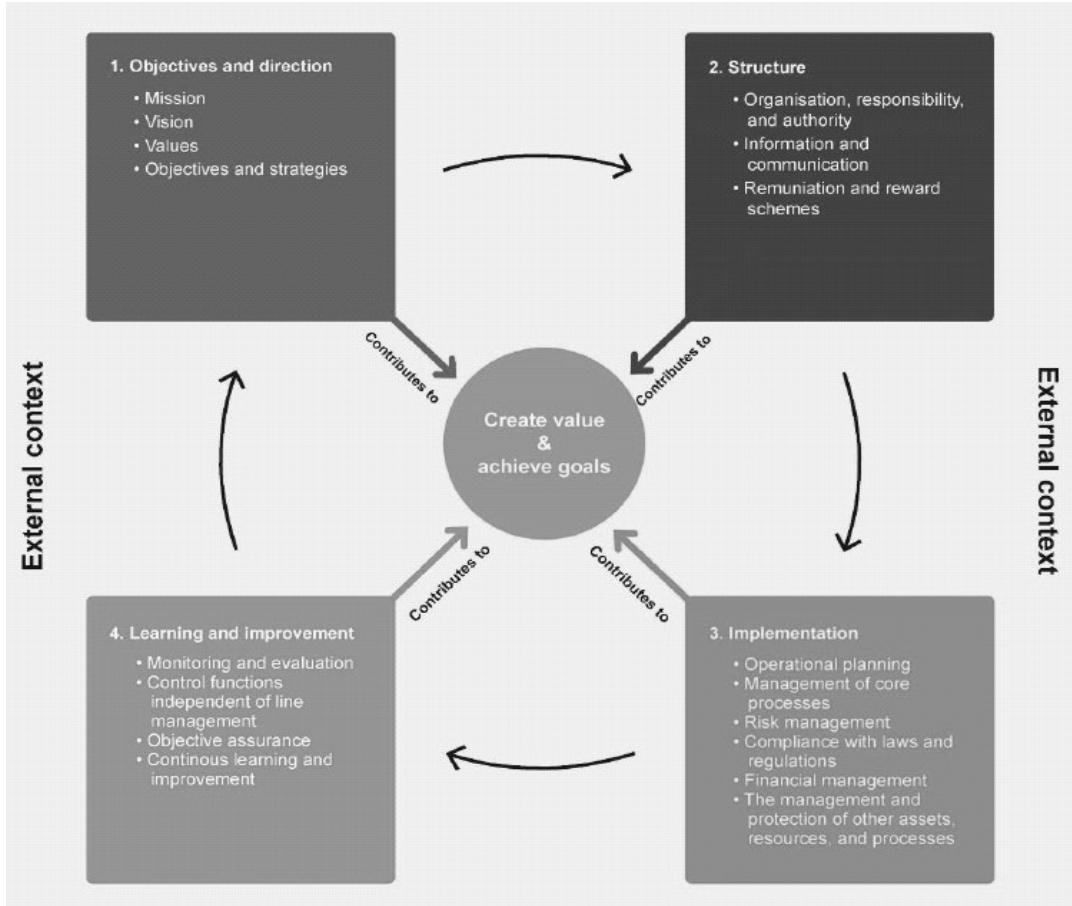
■ 조직의 목적과 방향 ( Objectives and direction)

■ 조직의 구조 ( Structure)

■ 구현 / 시행 ( Implementation)

■ 학습과 개선( Learning and improvement )

<그림 1-1> 거버넌스 구성



상기한 거버넌스 구성요소는 외부적 맥락(external context)이 고려하여 구현될 때 기업의 가치 창출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구성 요소의 순서는 프로세스 방법론 등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간에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동시에 작용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조경 수목공사 회계처리

**Q** 회사 화단 정비공사(수국 꽃)로 천만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했는데, 이런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축물 (?) / 임목 (?)) 비용(복리후생비 or 잡비 or 지급수수료 (?))으로 처리 가능한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감가상각 없이 자산만 올려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나무나 꽃이 없는 화단에 처음으로 식재를 하였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에 있던 화단을 정비하여 다시 식재를 하였다면 당기비용(계정과목은 지출 목적에 맞게 회사에서 판단하여 처리)으로 하시면 됩니다.

## 소액 대량구매시 자산화

**Q** 당사는 건설공사가 주된사업이며, 공사시 안전감시용 CCTV 10대를 550만원 (1대당 5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 - 비품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즉시상각이 가능하므로, 안전감시목적의 CCTV의 경우 귀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여짐으로 즉시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 회계 처리

**Q** 당사는 법인차량 (팰리세이드)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 비용은 대행사에 선지급 한 처리 하였습니다. 선지급 대체 하려고 하는데, 회계 처리 시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채매입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계정처리-> 차량운반구, other commission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2. 농협에서 채권 발행하였고, 대행사가 당사에서 선지급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 하였는데, 이 때 supplier를 대행사로 입력하여 처리하면 회계 상 문제가 없나요?

**A**

1. 법령에 의해 차량과 별도로 구매하는 채권(공채)는 차량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매도가 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대행사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제의 공급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외화(USD)로 중장비 구입시 환율

**Q** 폐사는 국내 법인과 매매약정을 맺고 중국산 중장비를 구입예정(인코텀즈 DDP조건)입니다. 이때 대금은 USD로 지급합니다. 계약시 30%, 중도금(선적시) 50%, 잔금(인도후) 20% 계약금 30%는 선물환계약 후 지급하며, 중도금/잔금은 수금한 USD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각각 USD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선물약정환율? 지급일 매매기준율? 수금일 매매기준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거래일의 환율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므로 실제 지급일의 환율로 반영하면 됩니다.

#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 되는 등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을 정하여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과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 지급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다음연도 2월~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배당을 결의하는데, 여러 이유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법인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지급의제 시기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경우는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세법상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배당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배당소득 지급의제시기(결의일부터 3개월)에 원천징수 의무 성립함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후,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2025년 2월(또는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5월(또는 6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인 6월10일(또는 7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개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주주는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개인주주(외국인 개인주주 포함)에게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소득세법이나 또는 해당 외국인 거주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는 지급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통칙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지급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밸류업 기업 관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주요 내용

구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
기존	현행 배당 전체×14% ※지방세 포함시 15.4%	배당 전체×비교 종합과세(14~45%)
개정	밸류업기업 배당 증가금액 ×9%+ 그외 배당 ×14%	$\begin{aligned} & \text{배당 증가 금액 등} \times 25\% + \text{그외 배당} \times \text{비교 종합과세} \\ & \text{or} \\ & \text{배당 증가 금액 등 (2000만원 한도)} \times 9\% + \text{그외 배당} \times \text{비교 종합과세} \end{aligned}$ ※둘 중 선택

### 화

#### 가족친화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비교

국가	제도	공제액
미국	보육 서비스 제공 기업	최대 15만달러(약 2억1800만원) 공제
일본	저출산·양성평등 인증 기업	법인세 공제율 5% 포인트 추가
한국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단녀·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1인당 1550만원·1300만원 지원*



##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간주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	최대 2병, 2L	최대 2L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7개 분야 54개 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등 추가)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	14개 분야 182개 시설	14개 분야 183개 시설 (탄소 중립 분야 시설 추가)



## 관세 대응 패키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 지원
무역보험 강화	피해발생 기업 대상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피해 중소·중견기업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U-턴 기업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소득세 등 U-턴기업 세액감면 적용</li> <li>피해기업 U-턴시 2026년까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및 보조금 지원비율 10%p 가산</li> </ul>
신속 대응체계 구축	코트라 내 '관세 대응 119' 신설



##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④

### 6.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장점은 한층 더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한다.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슈퍼맨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따금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자각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다. 즉 잘 모르는 것을 겸허하게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7.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한다

일찍이 학문의 목적은 도덕사상을 배우고 수양을 하기 위함이었다. 읽기, 쓰기, 셈과 같은 기초적인 배움은 어릴 때 익혀야 했고, 그 이후에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수양이 학문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학문은 기술을 몸에 익히는 공부로 바뀌고 말았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쌓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까' 하는 점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요즘은 지식이나 정보 습득이 옛날 만큼 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식이나 기술도 많이 익히고 배우면 좋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과제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며 수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전기자동차 무인충전 설치 장소가 아니고,  
사업자 직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사전법규부가-542, 2024.08.27

### 질 의

-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 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 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 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 분 : 25년 3월(특례적용대상 아님)

사전법규법인-411, 2024.06.21

### 질 의

-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질의대상] '23 '24년도분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2023년, 2024년, 202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귀 법인이 2023 및 2024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2023년)의 다음 과세연도(2024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 ■ 질 의

- 질의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쟁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 회 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04, 2024.06.11

#### ■ 질 의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4.4.5.)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 이전함

#### 질 의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수행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한 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종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당·재계는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가 투자, 인수·합병 등 중대 사항에 대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직권연장 '대상 1만6000곳'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 6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이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수출 비중을 계산할 때 해외 직접 수출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종료 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만일 이번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대 기준금리 시대 열렸다... 한은, 연 2.75%로 금리 인하

25일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이로써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도 막을 내렸다.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회견 중 "(금통위원) 모든 분이 다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다음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동결 가능성을 키운다.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국세청, 2025. 2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닐 것

-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최초납부 세액	(당초) '25. 3. 31.	➔	(연장) '25. 6. 30.
분납하는 세액	(당초) '25. 6. 2.	➔	(연장) '25. 9. 2.

- \* (예)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500만원은 6.30.까지 납부, 2,500만원은 9.2.까지 납부
-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 (기타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b>참고 1</b>	<b>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b>
-------------	-----------------------

- 세정지원 대상
  -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준

수출 중소기업	<p>❶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p> <p>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li> <li style="padding-left: 40px;">*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li> <li>·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li> <li style="padding-left: 40p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li> <li>· 대한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li> </ul>
------------	---

수출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닐 것
재난 피해기업	②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③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이 가능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 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①심사 진행상황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③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 가능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1일(금)	2월 24일(월)	2월 25일(화)	2월 26일(수)	2월 27일(목)
미 달 러 (USD)	1439.40	1434.10	1429.20	1430.70	1431.80
일 본 엔 (JPY)	962.91	961.26	953.59	959.69	961.49
영 국 파 운 드 (GBP)	1823.94	1814.21	1803.72	1812.77	1815.38
캐 나 다 달 러 (CAD)	1015.66	1009.04	1001.65	999.93	998.57
홍 콩 달 러 (HKD)	185.09	184.59	183.84	184.04	184.19
위 안 화 (CNH)	197.81	197.90	197.52	197.21	197.34
유 로 화 (EUR)	1511.95	1502.79	1495.51	1504.74	1501.74
호 주 달 러 (AUD)	922.22	913.74	906.76	908.28	903.32
싱 가 폴 달 러 (SGD)	1079.86	1073.39	1067.08	1070.84	1069.94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4.92	324.57	324.04	323.50	323.28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25. 2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4) >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 ① 단기 관광 ② 질병의 치료 ③ 친족 경조사 ④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사유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칙 §13⑥)

현 행	개 정 안
□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 ○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 : 선입선출법	□ 계산방법 합리화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개정이유>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4.1. 이후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 (3)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 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3⑩)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li> </ul> </li> <li>○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li> </ul> <p>□ 증권당 배당소득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li> </ul> </li> <li>○ (환매 등*) <math>A + B - C</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매도·해지·해산</li> <li>** A : 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li> <li>B : 증권당 환매 등 가액</li> <li>C : 증권당 매수가액</li> </ul> </li> </ul> <p>□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li> <li>○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li> </ul>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 ②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⑧·⑨) >

□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  
 ○ 다만,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유보 가능한 구체적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li> <li>○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li> <li>○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li> </ul>

<개정이유> 조각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 (4)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소득칙 §1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input type="checkbox"/>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입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li> </ul>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매도·매입계약서, 기초연금 지급결정 통지서</li> </ul>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5%</li> </ul>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5% → 3.1%</li> <li>*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li> </ul>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소득칙 §83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 ○ 2년	<input type="checkbox"/> 중과세율 미적용 기간 확대 ○ 2년 → 5년

<개정이유> 빈집 문제 해소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 (소득칙 §86의2, 법인칙 §6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79의4, 법인령§132의4) >

<input type="checkbox"/>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보유·거래 명세 변동 보고 ○ (제출시기)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보고 의무 면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소득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법인칙 제72호의6서식)**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 정보 : 성명, 주소, 납세자 번호 등 ○ 소득자 정보 ○ 소득지급자 정보 ○ 대리인 정보	<input type="checkbox"/> 제출 정보 간소화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1)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48) >

□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 구체적인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 특수관계인 비출자공동사업자 공동경비 손비 분담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li> <li>○ (예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사비 등 : 참석인원비율</li> <li>- 공동구매비 등 : 구매금액비율</li> <li>- 공동광고선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 수출금액</li> <li>(국내) 국내 매출액</li> </ul>                                 &lt;추 가&gt;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 총합계액</li> </ul>	<p>□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분담 기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동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li> <li>-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비) 소유지분비율</li> <li>(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li> </ul> </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541㉔)**

현 행	개 정 안
<p>□ 분할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p> <p>①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등</p> <p>②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거래(매입·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③ 분할사업부문과 동일 사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p> <p>④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lt;신 설&gt;</p>	<p>□ 승계 가능 주식등의 범위 확대</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③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자회사를 통한 간접지배 포함</p> <p>④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③에 해당하는 법인과 직·간접거래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예) A→B→C 순서로 매출할 경우                      A와 C의 간접매출비중 = (A와 B의 매출비중) × (B와 C의 매출비중)</p> <p>⑤ (좌 동)</p> <p>⑥ (좌 동)</p> <p>⑦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③~⑤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분할법인의 손자회사                      ** 분할법인의 자회사로서, 분할법인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중간지주회사</p>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 5년	<input type="checkbox"/> 내용연수 단축 ○ 5년 → 3년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칙 별표3)**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24·§26) >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추가
  - 철도시설관리권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li> <li>○ (7년) 특허권</li> <li>○ (10년) 어업권,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li> </ul> </li> <li>○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 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li> </ul> </li> <li style="padding-left: 20px;">&lt;추 가&gt;</li> <li>○ (50년) 댐사용권</li> </ul>	<input type="checkbox"/> 철도시설관리권 내용연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30년) 철도시설관리권</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철도시설관리권 비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상증칙 §14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고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세무서장 보고</li> <li>○ (기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확인 실시</li> </ul>	<input type="checkbox"/>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삭 제>

<개정이유>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기간 자율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규정(상증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li> <li>○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li> <li>○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li> </ul>

<개정이유> 공익법인 지정감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 (3)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상증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 확인 요청 가능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 (대상) ①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②감사인을 4년간 자유선임한 공익법인
  - (지정기준) ①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고, ②최근 5년 중 3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수행한 사람 중 지정점수\* 고득점순
- \* 감사업무 경력기간 및 감사실무 교육실적 바탕으로 산정

<개정이유> 국세청의 증빙자료 확인 근거 마련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7의2)

현 행	개 정 안
<p>□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산정방법</p> <p>*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부채에서 차감</li> <li>○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li> <li>- 보험사업 영위 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외)의 경우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li> <li>-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 비상위험준비금</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제외)</li> <li>-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li> </ul>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비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증부칙 §2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원용주택등의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변동 <추 가>	<input type="checkbox"/> 변동신고 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

<개정이유>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 증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증부칙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 <input type="checkbox"/>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기간 한시 연장 <input type="checkbox"/> 5년 → 5년('25.1.1.~'26.12.31.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증부칙 §4의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증부령 §4①(24)) >

합산배제되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input type="checkbox"/>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

<개정이유>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증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증부칙 §4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특례가 배제되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주택 수 특례 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역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가평군

<개정이유>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인건비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하는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R&D 공제율 적용 * 다만,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조특칙 5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대어·구입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됨을 명확화
  - \* (당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 → (개정) 목적 제한 폐지
-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li> <li><input type="checkbox"/> 문서, 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li> <li><input type="checkbox"/>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li> </ul>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3)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5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담부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할 것</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전담기관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담부서등</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input type="checkbox"/>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비용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강의로,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 * 수익(수강료)은 차감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5)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특례내용) 외국법인 주식 또는 사업·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 인수가액 한도(건당) : 5천억원 <input type="checkbox"/> (인수대상 외국법인) <b>①</b>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 기술 품목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추 가> <b>②</b>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b>①</b> (좌 동) <b>②</b>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b>③</b>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경제안보품목 생산기반 강화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외의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운수업) 차량 및 운반구 ○ (도매업 등) 창고시설 등 ○ (전문휴양업) 숙박시설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 확대 ○ (좌 등) ○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증기제조기 등)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명확화

**(7)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  
(조특칙 §19의5,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44④) >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서식 신설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신청시 제출하는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 현물출자계약서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증기부 고시)

<개정이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input type="checkbox"/>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input type="checkbox"/> 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 (지정기간) '23.3.21. ~ '25.3.20.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 만료지역 삭제, 신규지정지역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장성 동화·삼계·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개정이유>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신규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 입주한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

**(조특칙 §34④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81⑤) >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 증명서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근로소득 최초 발생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대체서류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개정이유> 가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4.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조특칙 §4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중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양도세 특례 배제 농어촌주택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역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가평군

<개정이유>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조특칙 §45의6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⑤) >

홀별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거주 요건 적용배제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일시퇴거 증명 자료 <input type="checkbox"/> 일시퇴거 증명 자료로 요양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일시퇴거한 부양자녀 - 연령요건 배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일시퇴거 증명 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 (조특칙 §47의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31) >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적용신청 시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취득명세서·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3)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조특칙 §48의7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의15) >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규정 구체화
  - 송객용역 정의,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처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매입세액 환급 범위 <input type="checkbox"/>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은 매출자에게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환급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14)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 방법 규정(조특칙 §52의3㉓)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21의2㉗) >

- 강습비 등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인 체육시설이용분에서 제외
  -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p>□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p> <p>○ 7개 분야 54개 시설*</p> <p>*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6개,                      ⑤수소 9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대상 확대</p> <p>○ 7개 분야 58개 시설</p> <p>-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p> <p>▪ (신규) 4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차전지 (1개)</td> <td>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가공시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디스 플레이 (2개)</td> <td>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 (1개)</td> <td>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td> </tr> </tbody> </table> <p>▪ (확대) 1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1개)</td> <td>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이차전지 (1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가공시설	디스 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1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분야	세부기술												
이차전지 (1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가공시설												
디스 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1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p>□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p> <p>○ 14개 분야 182개 시설*</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p>	<p>□ 대상 확대</p>

<p>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lt;추 가&gt;</p>	<p>○ 14개 분야 183개 시설 - (시설) 신규 1개, 확대 1개   ▪ (신규) 1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분야</th> <th>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탄소중립 (1개)</td> <td>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 (확대) 1개</td> </tr> <tr> <th style="width: 15%;">분야</th> <th>세부기술</th> </tr> <tr> <td>탄소중립 (1개)</td> <td>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 (확대) 1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 (확대) 1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6,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p>□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7개 분야 54개 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 14개 분야 185개 시설     &lt;신 설&gt;</p>	<p>□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 (좌 동)  ○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 :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시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 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 +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p>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연 3.5%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인하 ○ 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 (2)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국기칙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 ○ (원칙) 등기우편 ○ (예외)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허용	<input type="checkbox"/> 송달 → 우편송달 * 전자송달, 공시송달시 등기우편 불가 ] ○ (좌 동)

<개정이유> 국세행정 절차 명확화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국조칙 §2)

< 법 개정내용(국조법 §6)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 해야 하는 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 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국조칙 §19, 별지 제13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일정요건* 충족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합계액 500억원 초과</li> </ul> </li> <li>○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12개월 이내</li> <li>○ (제출자료) 법인개요, 특수관계거래 세부내용,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재무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제출</li> <li>* (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 제출</li> </ul>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국조칙 §4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li> <li>○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산</li> </ul>

<개정이유> 개정된 OECD 공통보고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①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국조칙 §70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①1) >

- 회계상 자산·부채금액이 아닌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부채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퇴직연금 관련 연금손익 조정</li> <li>②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li> <li>③ 국가 간 거래 시 정상가격·동일가격으로 조정</li> <li>④ 실현주의* 적용에 따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손상차손은 실제 처분·상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li> </ul> </li> <li>⑤ 이전대상기업*은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대한 직·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li> </ul> </li> <li>⑥ 소유지분 이전을 자산·부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 시 해당 취득가액으로 조정</li> <li>⑦ 적격합병 범위 내에서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li> <li>⑧ 국내세법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기초로 과세 시 해당 공정가액으로 조정</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국조칙 §74의2①~⑥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3조의2) >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개별 자산·부채 등 단위\*별로 계산한 비적격잔액\*\*의 전년 대비 순증가액
- \* ①개별 자산·부채, ②계정, ③계정그룹
- \*\* 사업연도말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서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미환원액을 차감한 금액
- 환원액 계산, 계정그룹 요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정·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 변동금액 추적 시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방식 적용</li> </ul> <p>□ 선입선출방식 적용요건(다음 ①-③중 하나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li> <li>②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 시 환원* 기간 차이가 2년 미만으로 유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상 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어 이연 법인세부채에 상당하는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li> </ul> </li> <li>③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 시 장기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입될 것을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일로부터 5년내 환원되지 않는 것</li> </ul> </li> </ul> <p>□ 계정그룹 요건*(다음 ①-③ 모두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미충족시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불가</li> <li>①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부채는 동일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할 것</li> <li>② 계정그룹에는 장·단기*이연법인세부채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이연법인세부채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 전부 환원되는 것</li> </ul> </li> <li>③ 다음(i-iv)은 계정그룹에 포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무형자산(비상각 또는 내용연수 5년 초과) 포함 계정</li> <li>- ii)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포함 계정</li> <li>- iii)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개별 자산·부채</li> <li>- iv)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시점별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는 계정</li> </ul> </li> </ul> <p>□ 합병 등으로 계정·계정그룹 구성에 변동 발생 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은 변동 후 계정·계정그룹에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비적격잔액, ②이연법인세부채 잔액, ③최초적용연도 전 이연법인세부채 중 미환원액, ④최근 5개 사업연도 중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액</li> </ul> <p>□ 계정·계정그룹 내 모든 이연법인세부채가 5년 내 환원될 것을 입증하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단기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도 계정그룹에 포함 가능</li> <li>** 미입증 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불가</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연법인세부채 환원액 처리방법(국조칙 §74의2⑦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①2나4) >

- 5년내 환원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 5년선택하여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 가능
- 5년선택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선택 적용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선택 적용</li> </ul> </li>   <li>□ 5년선택 적용 후 환원액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인식시점(선입선출·후입선출) 판단 후 선택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환원*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적용연도 전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정·계정그룹 단위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채가 우선 환원된 것으로 간주</li> <li>→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li> </ul> </li> </ul> </li>   <li>□ 5년선택 취소 후 환원액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인식시점(선입선출·후입선출) 판단 후 선택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이미 산입된 금액이 환원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국조칙 §75⑫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금을 배당지급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li> <li>** 추가세액 계산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li> </ul> </li> <li>○ 특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시 차감비율* 만큼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액 ÷ 차감 전 글로벌최저한세소득</li> </ul> </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국조칙 §86①, ②·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 판단을 위한 적격재무제표* 범위</p> <p>①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p> <p>② 인정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p> <p>③ 국가별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p> <p>&lt;단서 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적격재무제표 범위 확대</p> <p>○ 단,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된 재무제표도 다음 모두 충족 시 적격재무제표로 간주</p> <p>* 피인수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피인수 시점의 공정가치로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p> <p>○ 하방회계가액 조정 재무제표의 지속적 보고</p> <p>○ 영업권* 손상을 이익 감소로 처리한 경우, 간이실효세율 및 초과이익 요건 판단 시 해당 금액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p> <p>* '21.12.1일 이후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발생한 영업권에 한정</p> <p>** 간이실효세율 요건 판단 시에는 영업권의 손상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이 없는 경우에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적격재무제표 국가별 사용 방법</p> <p>○ 동일 국가 소재 구성기업 : 같은 적격재무제표 사용*</p> <p>* 연결제외기업·고정사업장은 적격 재무제표의 자료도 사용 가능</p> <p>○ 다른 국가 소재 구성기업 : 다른 적격재무제표 사용 가능</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6⑦~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혼성거래약정*별 세전손익금액** 및 법인세비용의 조정방법</p> <p>* 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세금부담 경감 거래(‘22.12.16일 이후 체결분만 해당)</p> <p>**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p> <p>① 신용공여를 받은 구성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하나, 신용공여를 제공한 구성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과세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약정</p> <p>* ① 과세소득에 포함된 혼성거래약정 관련 금액이 이월결손금 등과 상계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② 구성기업 비용이 거래 상대방의 세전손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동일 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조정) 약정에 따른 비용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p> <p>② 여러 구성기업에서 비용이 중복 인식되거나, 한 구성기업의 비용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p> <p style="padding-left: 20px;">→ (조정) 약정에 따른 비용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p> <p>③ 동일 법인세비용이 둘 이상 구성기업의 법인세 비용에 중복 산입되는 약정</p> <p style="padding-left: 20px;">→ (조정) 약정에 따라 중복 산입된 법인세비용 차감</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8(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p> <p>○ 다음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시 전환기적용면제 적용 가능</p> <p>① 적격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p> <p>②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이었을 경우 계산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금액** 적용</p> <p>*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p> <p>**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국조칙 별표 4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가 구성기업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조정</li> <li>* 구성기업인 투시과세기업에 발생한 적격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제외</li> <li>- 다만, 지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격세액공제를 조정 하지 않음</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 관세법 시행규칙

###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5%</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5% → 3.1%*</li> <li>*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li> </ul>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 감면 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80%)</li> <l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li> <li>○ 한국디자인진흥원</li> </ul>	<p><input type="checkbox"/> 대상기관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 ○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li> <li>○ 한국소비자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li> <li>○ 전쟁기념사업회, ○ 국토안전관리원</li> <li>○ 과학관 ○ 농업기술원</li> <li>○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li> <li>○ 국방과학연구소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식품안전정보원(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li> </ul>
--	---

<개정이유> 해외직구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업무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관세칙 §48㉓)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 면세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병</td> <td>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td> </tr> </table>	2 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병수 기준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td> </tr> </table>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2 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개정이유> 해외여행객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

###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관세칙 §50㉑)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li> <li>○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li> <li>○ (중략)</li> <li>○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li> <li>○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24년 시행)</li> </ul>	<input type="checkbox"/> 대상 물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li> </ul>

<개정이유> 재수출물품에 대한 면세로 수출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하(관세칙§68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 ○ (2천억원 이하) 0.1%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 (1조원 초과) 1%	<input type="checkbox"/> 특허수수료 50% 인하 ○ 0.1% → 0.05% ○ 0.5% → 0.25% ○ 1% → 0.5%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

**9. 기타 개정사항**

**(1)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증권칙§2,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조정환급명세서 ○ 본점 일괄납부하는 경우 :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사인 간 거래의 납세의무자 : 양도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 비과세양도명세서, 세액면제신청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예탁결제원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징수 내역 첨부 추가 ○ (좌 동) ○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식 신설)

<개정이유> 증권거래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방법 변경(과제칙 §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전자적 기록매체*	<input type="checkbox"/> 제출방법 변경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제출

로 제출 가능 *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단서 신설>	-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	--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세무대리인 정보 관련 서식 변경

(부가칙 별지 제21호, 소득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대리인 정보 ○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추가 ○ (좌 등) ○ 세무대리인관리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 * 국세청 훈령에 따라 관리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일 이후 서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4)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2)

< 시행령 개정내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 등) >

<input type="checkbox"/>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을 삭제
--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콩나물재배업	<삭 제>

<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